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97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서지영·박충권·조경태

인요한 · 김용태 · 서일준

김대식 · 정성국 · 김선교

정동만 • 박성훈 • 윤영석

김소희 · 최은석 의원

(14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,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,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 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

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(안 제60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이 제49조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위원의 발언) ①・② (생	제60조(위원의 발언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위원장이 제49조에 따른 위
	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
	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
	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야 한
	다.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
	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